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01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기웅 · 임종득 · 김소희
서명옥 · 백종현 · 최형두
박성훈 · 추경호 · 이종배
윤재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실태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의 도입 여부
2.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관리 실태
3. 그 밖에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4(1회용품 사용 억제 등</u> <u>의 실태 점검) ① 기후에너지</u> <u>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u> <u>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u> <u>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u> <u>품의 사용 및 무상 제공 실태</u> <u>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는 다</u> <u>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u> <u>있다.</u> <u>1. 1회용품의 사용량 변화, 재</u> <u>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의 도</u> <u>입 여부</u> <u>2.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1회</u> <u>용품 사용 및 제공 관리 실태</u> <u>3. 그 밖에 이행 실태 점검을</u> <u>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u> <u>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u> <u>사항</u> <u>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u> <u>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공개</u> <u>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u>

	<u>및 절차, 제3항에 따른 공개 등</u>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u> <u>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	--